

# 예 산 총 칙

2015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298,903,943	8,967,118
일반회계	265,455,664	7,963,670
특별회계	33,448,279	1,003,448
기타특별회계	33,448,279	1,003,448
상수도사업특별회계	5,636,796	169,104
수질개선특별회계	21,855,020	655,651
의료보호특별회계	363,929	10,918
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	5,592,534	167,776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" 해당없음"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"변동없음"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,635,000천원이고 재난·재해목적예비비는 23,463,247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,6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